

대구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나320380 판결 [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나320380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6435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7. 6.

판결선고 2022. 8. 1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6435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그 중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15.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7,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새로운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20. 8. 31.자 내용증명을 통해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하며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 통지하였고, 원고 또한 2020. 9. 8.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통지에 의하여 해제되었거나 원 · 피고 쌍방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20. 8. 31.자로 원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제2호증의 1)은 계약해제의 통보라기보다는 이행의 최고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그 후에도 계속 잔금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채무불이행에 빠졌지만,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20. 9. 15.자 내용증명(을 제2호증의 2)을 통해 원고에게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계속하여 잔금 지급을 최고하였고, 2021. 6. 15.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지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을 뿐 계약을 해제할 의사가 없었음이 분명하고, 한편, 앞서 판시하였듯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해제 통보 및 피고의 해지 동의로 합의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새로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태, 판사 박치봉, 판사 서영애